

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근거 및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나. 지원센터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다.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~ 제15조)

라.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 ~ 제18조)

마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
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비정규직”이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·제2호 또는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·도급 근로자를 말한다.
2. “공공부문”이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, 시가 출자·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과 민간에 위탁된 시의 사무 등을 말한다.
3. “차별적 처우”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가 수행하는 비정규직 관련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

제4조(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

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 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위탁 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,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,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.

제5조(차별금지 및 법령준수)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

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근로자, 통상근로자,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, 비정규직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,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6조(고충처리)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·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

제7조(최저임금 준수노력 등) ① 시장은 시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며,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
2. 위반사항 신고접수
3.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
4.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창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,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제8조(우수기업 우대 등)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하여 일정한 실적을 올린 시 소재 우수기업(이하 “우수기업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우대하거나 이를 경상북도에 요청한다.

1.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
 2. 「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구미시최고기업인상 및 구미시최고근로자상 수여, 예우대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, 우선구매 판로 지원 등
 3. 「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
 4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
 5.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사업
- ② 제1항의 우수기업 선정기준, 우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.
1.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비율이 다시 높아진 기업
 2. 산업재해 및 직업병, 반인권 및 부당노동행위, 환경파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 3.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·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기업

4.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경영을 한 기업

제9조(취업촉진 노력)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, 직업지도, 취업알선,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장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

제10조(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) ① 시장은 시 관내에 구미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
2.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
3. 노동관계법 교육, 성평등 교육,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,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
4.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소 등 고용촉진 사업
5. 여성 노동상담, 여성비정규직 연구·조사 사업, 모성보호, 일·가정 양립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지원 사업
6. 본 조례의 목적취지에 동의하는 노동,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지원사업

7. 시 공공부문 업체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관리 및 조사사업
8.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2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,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위탁계약으로 정한다.

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 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와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위탁계약서 상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
2.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
3.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시장의 행정 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
5.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감독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검사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, 시장은 감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6조(운영위원회 설치)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7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의 장과 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한다.

1. 구미시의회 의원

2. 비정규직 근로자

3.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

2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

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장 보칙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「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기간제근로자”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(이하 “기간제 근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.
2. “단시간근로자”라 함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.
3. 생략

□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4. 생략
5. “파견근로자”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.
6. ~ 7. 생략

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구미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및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의 소요가 예상됨(안 제10조, 제12조, 제18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, 제2호에 해당
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구미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비용의 구체적인 추계가 어려움
-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 - 산출내역

내 용		산출내역	금액
구미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	위원회 참석수당	100천원×12명×2회	2,400천원

※ 위원회 참석수당 산출근거 : 70,000원(기본) + 30,000원(초과)

4. 작성자

노동복지과 지방행정주사보 손준호 (054-480-6202)

소 관 부 서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김 팔 근
	담 당	정 형 관
	담 당 자	손 준 호 (480-6202)